

문의사항

박재호관세사 T/ 02-6011-3026 메일/jhpark9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

2016.07.19

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관세청에서는 그 동안 수출입기업의 손톱 밑 가시로 여겨졌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한-중 FTA 등 특혜 제도의 효율적인 활용을 담보하기 위하여 '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'을 발표하였습니다.

주요 내용 중, 수출입기업들이 눈여겨 볼만한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주요내용

1. 원산지 검증절차 완화

- 조사대상자의 특성상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**서면심사 절차를** 생략하고 바로 현지조사를 가능하게 하여 원산지 조사 소요 기간이 약 3개월 단축
-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원산지 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한-EU, 터키, EFTA 협정 상 불필요한 수입자 조사를 생략 함으로써 수입자의 조사 부담 경감



문의사항

박재호관세사 T/02-6011-3026 메일/jhpark9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

2016.07.19

주요내용

2.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

- 가산세 가중
- 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**거짓으로 작성 또는 위/변조**하는 경우
- 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등 **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**하는 경우
- 협정관세를 적용 받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
- 가산세 감면
- 원산지증명서 오류를 통보받고 원산지조사통지 이전에 수입신고하는 경우
-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하는 경우
- 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**기간 내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**하는 경우

3.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

- **납세 담보 제공 시 협정관세의 적용보류를 해제**할 수 있도록 하여 **납세자의 납세부담 완화**
- **담보금액**: 협정관세 미적용 시 추가 납부할 세액 상당액 (내국세 등 포함)
- **담보해제사유**: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 확인



문의사항

박재호관세사 T/02-6011-3026 메일/jhpark9@esein.co.kr

세인 소식지 www.seincustoms.com

2016.07.19

주요내용

4.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

- 2016년 7월이후 발급되는 품목별 원산지인증서는
 HS 4단위를 기준(기존 HS 6단위)
 - **다만**, 실제 적용되는 품목은 신청한 HS 6단위 품목에 한정됨을 유의

5. 각종 FTA규정 관련

- 한-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
- 역내 부가가치 계산 시 기존 '공제법' 외에 '**직접법' 선택 적용 가능**
- 한-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으로 전환
- 기존에는 기관발급이 원칙이고 자율발급이 예외 ((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)였으나, 2016년 8월 이후부터 **자율발급이** 원칙적인 발급방식으로 변경
- 한-콜롬비아 FTA 발효
 - 뉴스레터 **제 260호** 참조
-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 원본 제출 생략
 - 뉴스레터 **제 261호** 참조

2016년 하반기 달라지는 관세행정

2016. 7.



목 차

①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	1
②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	2
③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	3
④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	4
5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	5
⑥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	6
7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	7
⑧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	8
⑨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	9
10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	10
11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	11
12 한-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	12
🗓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(C/O) 원본 제출 생략	13
14 한-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	14
15 한-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으로 전환	15
16 한-콜롬비아 FTA 발효	16
17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	17
18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	18
19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	19
20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	20
②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	21
②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	22
23 해외 이사화물 정보 통합 제공	23
24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	24

□ 관세청장의 중소기업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확대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 □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	□ 중소기업의 원산지증명 지원
<신 설>	 ○ 인증수출자 인증취득 관련 상담・교육 ○ 원산지증명 전산시스템 개발・보급 ○ 원산지증빙서류 작성・보관방법에 관한 상담・교육 ○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조사에 대비한 상담・교육 ○ 기타 중소기업이 원산지증명과 관련하여 요청하는 사항 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제13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)

- [기대효과]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FTA 교육 및 상담 사업 확대
- (지원 확대) 법적근거 신설로 예산 확보 및 대상범위가 확대되어 FTA 교육·컨설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 증가
- (인증수출자) 인증수출자 지정요건인 원산지관리사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원산지관리사 취업 지원

②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단축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기산일	□ 원산지증빙서류 보관 기간 기산일 변경
(수입자)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한 다음날부터 5년	○ (좌 동)
○ (수출자)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5년 ○ (생산자) 증빙서류 작성일부터 5년	 ○ (수출자・생산자) 원산지증명서 발급일 또는 작성일부터 5년 - 단, 중국의 경우는 3년 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0조)

- [기대효과] 원산지증빙서류 보관기간 명확화로 수출자·생산자 부담 완화
- (한・중) 협정 제3.20조에 따라 자료 보관을 3년으로 단축
- (자료보관 대상자)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한 수출자·생산자에 한해 자료보관 의무 생성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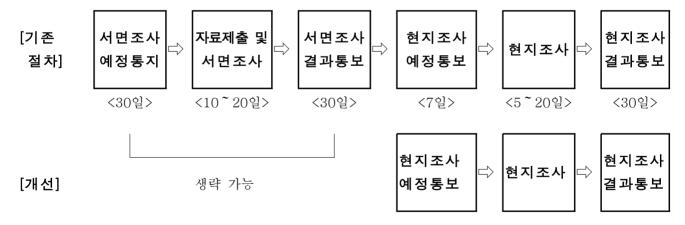
③ 수출입물품 원산지조사 소요기간 단축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서면조사 완료 후 현지조사	□ 현지조사 우선 실시 가능
어면조사 의무적 실시 이후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	조사대상자 특성상 또는 요청이 있는 경우 바로 현지조사 가능
	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1조)

○ [기대효과] 원산지조사 소요기간이 약 3개월 단축

<예시: 국내 원산지조사 절차 변경 흐름도>



④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 명확화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대미 섬유수출품 원산지조사 절차	□ 조사결과 통지기한 명확화
조사기간: 접수일로부터 6월 이내 완료	ㅇ (좌 동)
 조사결과통지: 조사가 완료되면 조사결과서 및 원산지증빙서류사 본을 미국의 관세당국에 송부 * 증빙서류는 조사대상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공 	 조사결과 통지: 미합중국 관세당국이 요청한 날부터 <u>12개월 이내</u>에 원 산지증빙서류 사본 등 조사결과 통지
	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4조)

○ [기대효과] 대미 섬유수출품에 대한 간접검증(한국세관이 수행)에 있어 수출기업이 원산지조사에 대응(증빙자료 추가확보 및 이의신 청기간)할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여 원산지조사에 대한 불이익 방지

5 수입자에 대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체약상대국에 대한 원산지확인 요청(간접검증) 사유	□ 수입자 조사를 생략하고 상대국에 원산지확인 요청 가능
수입자 조사 후 원산지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확인 필요시무작위방식으로 표본조사시	○ (좌 동)
<u><신 설></u>	○ 수입자가 제출한 원산지증빙서류로 원산지확인이 곤란하거나 추가확인 필요시
	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6조)

- ㅇ [기대효과] 불필요한 수입자 조사 생략으로 원산지조사 부담 완화
-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 및 원산지간접검증 방식을 채택한 한-EU, 터키, EFTA 협정은 수입자가 원산지를 입증할만한 자료를 보유 하고 있지 않음에도 의무적인 수입자 조사 절차가 필요했으나,
-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에 의심이 있는 경우, 수입자를 조사할 필요 없이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 결과 회신에 따라 특혜 적용 여부를 결정하게 되어 수입자의 원산지조사 부담을 경감

⑤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강화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C/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 사항 ○ 대한상공회의소의 원산지증명서 발급 담당 직원에 대해 교육 실시	□ C/O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・감독 사항○ (좌 동)
<u><신 설></u>	ㅇ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
<u><신 설></u>	○ 증명서발급기관에 대한 지도·감독
	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제11조,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)

○ [기대효과] 원산지증명서 발급 절차, 양식 등의 통일화 및 원산지 증명서 신뢰성 제고로 FTA 활용 촉진에 기여

7 협정관세 적용보류 해제 근거 신설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사유 <u><신 설></u>	□ 협정관세 적용보류의 해제사유 ○ 적용보류기간 만료 전일 것 ○ 수입자의 담보제공 및 담보 해제 요청시 해제 - 담보금액: 협정관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추가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 상당액(내국세등 포함) - 담보해제사유: 원산지 조사대상 물품이 협정관세 적용대상임을
	확인한 경우 담보해제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제21조, 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18조)

○ [기대효과] 납세담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세관장이 협정관세 적용보류를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납세부담 완화

图 협정관세 적용물품 가산세 부과 및 경감 근거 신설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<u> <신 설></u>	□ 가산세 가중
	수입자가 원산지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위・변조하는 경우
	수입자가 원산지증빙서류 등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파기 하는 경우
	협정관세 적용받기 위해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
	□ 가산세 감면
	원산지증명서 오류를 통보받고 원산지조사 통지 이전에 수입신고할 때
	체약상대국 관세당국이 기한 내에 간접검증 결과를 회신하지 아니할 때
	체약상대국 수출자 등이 기간 내 자료 제출하지 아니할 때
	ㅇ (준용) 관세법 시행령 \$39②~⑤
	□ [시행일] ′16. 7월
	(FTA관세특례법 제36조, FTA관 세특례법 시행령 제47조)

○ [기대효과] 가산세 적용 이자율, 가산세 가중 및 감면사유 등을 신설하고 수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하는 등 수입자의 부담 완화

9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요건 완화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○ HS 6단위	□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 ○ HS 4단위 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제12조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, 동법 시행규칙 제17조, 제18조)

○ [기대효과] 기존 품목별 원산지인증서 발급기준을 HS '6단위' 기준 에서 '4단위' 기준으로 변경하여 업체의 편의 제고(FTA 활용 증대)

10 FTA특례법 의무조항 위반 과태료 감경 규정 신설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과태료 부과기준	□ 과태료 감경기준 명확화 및 위반 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완화
 세관장이 위반행위의 정도·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1/2 감경 가능 	 ○ (감경) 감경율 1/2 이내 -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§2의2① -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될 때 -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시정・해소하기 위해 노력한 것이 인정될 때 - 위반행위 정도,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감경 필요가 있을 때 ○ 위반횟수에 따른 과태료 금액 완화 (3회이상 위반 → 4회 이상 위반) 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관세특례법 시행령 제54조, 별표 25

○ [기대효과] 과태료 감경기준 및 최고 상한액 부과까지의 횟수가 증가하여 단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의 부담을 경감

11 원산지조사 대상자 조력 받을 권리 확대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원산지조사 대상자의 조력을 받을 권리	□ 원산지 조사대상자 조력받을 권리 확대
ㅇ 현지조사 대상자	ㅇ(좌 동)
<u><신 설></u>	ㅇ 서면조사 대상자
	□ [시행일] '16. 7월 (FTA특례법 제17조제8항 신설)

○ [기대효과] 전문가의 조력의 범위가 현지조사에서 원산지조사로 확대되어, 서면조사 단계부터 납세자의 권리보호 확대

12 한-중 FTA 전용 협정관세적용신청서 신설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모든 FTA협정에 단일 양식의 협정 관세적용신청서 사용	□ 한-중 FTA 협정관세 적용신청시 《한-중 협정관세적용신청서》사용
○ 갑지(협정관세 신청)3	○ (좌 동)
○ 을지(수입란별 C/O 정보)	○ (좌 동)
<u><신 설></u>	ㅇ 병지(수입신고-C/O 품목 연계정보)
	* 관세청 공고 2016-49호
	□ [시행일] '16. 7월

○ [기대효과]

- 한-중 세관당국간 C/O별 특혜적용여부 피드백 교환으로 수출자 특혜적용 관리 및 지원 강화
- 모델·규격 단위별 C/O 사용량 등 전산관리 용이

13 한-중 FTA 원산지증명서(C/O) 원본 제출 생략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FTA 신청시 C/O 원본 제출	□ C/O 원본 제출 전면 생략
(중국) 모든 FTA 신청시 사전 C/O 원본 제출 (한국) 수입신고 '서류제출대상' 또는 '사후신청'시 C/O 원본 제출	 원산지 전자 자료교환 시스템(EODES) 내 C/O 자료 교환시, 양국 모두 C/O 제출 생략
	□ [시행일] '16. 12월

○ [기대효과] 對中 수출시 원산지증명서가 화물보다 늦게 도착하여 발생하는 물류비용 감소 대중 수출촉진 및 아국 수입시 P/L 통관확대로 신고인 편의제고

14 한-아세안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대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한-아세안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 '공제법'일괄 적용	□ 한-아세안 역내 부가가치 계산 방식 '공제법', '직접법' 선택 적용
○ 부가가치 계산 방법 : 공제법	ㅇ (좌 동)
<u><신 설></u>	ㅇ '직접법' 선택하여 계산
*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§12 제3 호 별표6	- 다만, <u>동일한 회계연도에는 계산</u> <u>방식 변경 불가</u>
	* 다만, 한-아세안 FTA협정의 개정을 위한 제3의정서'의 발효가 되지 않은 아세 안회원국은 공제법만을 적용
	□ [시행일] ASEAN 국가 중 태국('16.1月), 미안마('16.2月), 싱가포르 ('16.4月) 3개국 旣시행 ASEAN 기타 국가는 자국 내 개정 절차를 완료하여 한국에 통보한 후에 발효 예정

○ [기대효과] 부가가치 계산방법 변경으로, 수출자 선택 편의 제고

15 한-페루 FTA 원산지증명서 기관발급에서 자율발급 전환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한-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	□ 한-페루 원산지증명서 발급방식
○ (원칙) 기관발급: 원산지증명서 (협정 부록 4가-1)	○ 수출자 자율방식 (협정 부속서 4나)
○ (예외) 자율발급: 원산지신고서 (협정 부록 4가-2) * 인증수출자 및 미화 2천불 이하 수출자	○ (한시적) 현행 원산지증명서 방식 인정 (~ '16. 12월)
[협정문 부속서 4가]	□ [시행일] '16. 8. 1. [협정문 제4장, 부속서 4나]

○ [기대효과] 원산지증명서(C/O) 자율발급에 따른 수출자 편의 증대 및 신속한 C/O 발급

16 한-콜롬비아 FTA 발효

(FTA집행기획담당관실 042-481-3206)

현 행	개 선
□ 우리나라 FTA 협정발효 국	□ 우리나라 FTA 협정발효 국
 14건, 51국 칠레, 싱가포르, EFTA(4), 아세안(10), EU(28), 페루, 미국, 터키, 호주, 	15건, 52국으로 확대- (좌 동)
캐나다, 중국, 뉴질랜드, 베트남 < <u>신</u> 설>	- 콜롬비아 추가
	□ [발효일] '16. 7. 15.

○ [기대효과] 콜롬비아 내수 시장 선점 자동차(부품), 화장품 등 수출확대 기대

17 유통이력대상물품 확대 및 신고의무 완화

(통관기획과 042-481-7815)

혅 했 개 선 □ 유통이력대상물품 27개 □ 유통이력대상물품 31개 ○ 공업용 천일염. 공업용 대두유. ○ (추가지정) 보리. 팥. 인삼제품. 냉동복어(금밀복), 황기, 뱀장어, 홍삼 4개 품목 추가 냉동고추, 당귀, 냉동조기, 건고 *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<별표 1> 추, 향어, 활낙지, 지황, 천궁, 사 탕무 원당, 냉동옥돔, 작약, 황금, <참고> 신규지정 11개 품목 중 위 4개 품목 냉동고등어, 냉동갈치, 미꾸라지, 은 올해 하반기 우선 시행, 나머지 7개 품목 명태, 가리비, 돔, 냉동꽁치, 김 (냉동꽃게, 대두, 참깨분, 참깨, 땅콩, 도라지, 치, 식염, 식용 천일염 염장새우)은 '17년 시행 □ 개인 판매분 일괄신고제도 도입 <신 설> ㅇ 유통이력 신고의무자가 일반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한 것은 5일 단위 로 묶어서 1건으로 일괄신고 할 수 있도록 신고의무 완화 *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⑦ 유통이력신고의무자는 유통 이력대상물품을 일반 소비자에게 판 매한 것은 5일 단위로 판매량을 합계 하여 1건으로 신고할 수 있다. □ 「시행일〕′16. 8. (수입물품 유통이력에 관한 고시 별표 1.) * 유통이력 고시 개정시 적용

o [기대효과] 국민보건 확보 및 신고의무자 부담 완화

18 물품별 적정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

(특수통관과 042-481-7644)

현 행	개 선
□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	□ 물품별 적정 원산지 표시 방법
 단호박(HS 0709), 파인애플(0804), 멜론·수박(0807) 수입시 현품 원산지 표시 	○ 단호박, 파인애플, 멜론·수박에 대해 최소포장 원산지 표시 허용
의자, 소파(HS 9401) 현품에 원산지 표시	○ 조립식 의자(DIY 등)는 소매용 최소포장에 원산지표시 허용
*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<별표2>	
	□ [시행일] '16. 6월 30일
	(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고시 <별표2>)

○ [기대효과]

- 조립식 의자 수입시 현품에 원산지를 표시 하기 위한 포장 해체 작업 부담 감소
- 원산지표시 방법 완화로 통관 소요시간 단축 및 원활한 물류흐름 기대

19 특송물품 전용 물류센터 개통

(특수통관과 042-481-7838)

현 행	개 선
□ 특송물품 통관	□ 특송물품 집중 통관제도 시행
(지정장치장) 인천공항, 김포공항의 세관지정장치장에서 특송화물 통관 처리	화물의 투입 및 반출이 전면 자동화라인이 구축된 물류센터 에서 모든 특송화물 통관 처리
 (자가통관) 일정한 요건을 갖춘 업체*의 경우 자체시설을 이용하여 특송화물 통관 * DHL,FEDEX,UPS 등 	- 단, 관세법 상 일정 요건을 충족한 특송업체는 자체시설을 이용한 특송물품 통관 허용
	□ [시행일] '16. 7월 1일

○ [기대효과] 신속한 물류처리 및 물류비 절감을 통한 국민 만족도 증대

② 보세공장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

(수출입물류과 042-481-7823)

현 행	개 선
□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	□ 장외 작업 반출입 절차 간소화
 보세공장 장외작업 시 장외작업 장이 다를 경우 장외작업 별로 장외작업허가 신청 * 장외작업허가 신청 시 보세공장에 물 	 장소가 다른 장외작업장에서 바로 추가 공정이 계속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일괄 허가 신청 가능 * 보세공장에 물품을 반입하지 않고
품을 반입한 후 가능	다른 장외작업으로 물품 이동 가능
	□ [시행일] '16. 9월
	* 보세공장 고시 개정시 적용

ㅇ [기대효과] 현실에 맞는 개선을 통한 업체 물류비용 절감

21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

【세원심사과 042-481-7643(사후관리), 7872(담보)】

현 행	개 선
□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	□ 분할납부물품 사후관리 종결
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업체의 '사후관리 종결 신청' 또는 세관 의 '수작업 종결'	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<u>사후관리</u> <u>자동 종결</u>
	※ 사후관리시스템 개선
□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	□ 분할납부물품 담보 해제
분납세액 납부 완료 후 업체의 담보해제 신청 시 담보 해제	○ 분납세액 납부 완료 시 <u>제공된</u> <u>담보 자동 해제</u>
	※ 담보관리시스템 개선
	□ [시행일] '16. 12월

○ [기대효과] 사후관리 종결 및 담보 해제 절차 간소화로 행정 효율성 제고

22 수출 중소기업의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제도 신설

(심사정책과 042-481-7754)

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 ·	개 선
□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	□ (좌 동)
사업자가 재화 수입시 세관에 부가가치세 납부후 세무서에서 정산	
<신 설>	□ 일부 업체에 대해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
	○ 적용대상 : 일정 요건*을 충족하는 중소 제조기업
	*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중 수출액 비중이 30%이상 또는 수출액 100억원 이상
	○ 적용방법 : 재화 수입시 세관에서 부가 가치세 납부유예 를 받고, 세무서에 부가가치세(예정, 확정) 신고시 정산 * * 납부유예세액과 매입세액공제액 상계
	□ [시행일] '16. 7. 1. (부가가치세법 제50조의2 신설)

○ [기대효과] 수출 중소기업의 자금부담 완화를 통한 경영지원

23 해외 이사화물 정보 통합 제공

(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42-481-7716)

현 행	개 선
□ 해외 이사화물 정보 이용 불편	□ 홈페이지상 해외이사화물 정보 통합 제공
공급자 중심 정보 제공으로 국민이용에 불편	해외 이사화물 정보를 사용자 중심으로 맞춤형 제공
 ○ 특히, 해외 이사화물 차량 반입 관련 정보는 기관별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개별 제공 중* * (수입통관) 관세청 → (차량검사) 교통 안전공단 → (환경인증) 한국환경공단 → (차량등록) 차량등록사업소 	○ 기관 간 정보 공유를 통해 이사 화물 차량의 수입통관에서 검사· 등록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정 보를 통합, 사전 안내
	□ [시행일] '16. 10월 * 전자통관시스템 개선

○ [기대효과] 정보의 통합 제공을 통한 국민 편의 제고

24 민관협력을 통한 무역금융 사기대출 예방 시스템 구축

(창조기획재정담당관실 042-481-7716)

현 행	개 선
□ 무역금융 사기대출 위험 지속	□ 무역금융 사기대출예방을 위한 실시간 정보 제공
<	 무역금융 대출신청건과 관련된 수 출품목의 정상적인 수출가격* 실시간 제공 * 정보공유 MOU체결: 수출입은행('15.6月), 무역보험공사('15.6月), 은행연합회('16.3月) * 과거 통관자료를 분석하여 HS 10단위품목별 평균가격 범위 제공 대출 심사시 은행 자체전산망에서수출이행(선적)내역이 즉시 조회할수 있도록 정보연계시스템 구축 【시행일】'16.6월

○ [기대효과] 예방시스템 구축으로 무역금융사기대출을 사전차단 하여 매년 수천억 상당의 공공재원 누수 예방 효과 기대